

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2839
----------	------

발의연월일 : 2024. 2. .
발 의 자 : 오승철 의원

1. 수정이유

- 아동친화도시 조성 사업 추진 시 비용의 보조 및 경품 등 제공 물품을 직접 명시한 사항이 「공직선거법」에 위반될 소지가 있으므로 해당 조항을 삭제하고자 함
- 「아동복지법」 제59조에 따라 조문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아동친화도시 조성사업 시 비용의 보조 및 경품 등 제공물품 관련 조항 삭제 (안 제10조제2항)
- 조례안 제13조의4제1항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 물품”을 “아동복지사업의 지도, 감독,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”으로 수정(안 제13조의4제1항)

3. 수정조례안 : 덧붙임

4. 수정안 조문 대비표 : 덧붙임

하남시조례 제 호

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수정안

하남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제10조제2항을 삭제하고,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제2항 및 제3항으로 한다.

제13조의4제1항 중 “예산의 범위에서 아동권리에 대한 홍보물품”을 “아동복지사업의 지도, 감독, 계몽 및 홍보에 필요한 물품”으로 한다.

『위의 수정 부분 이외의 수정하지 않은 나머지 부분은 개정안과 같음』

